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운물류해사연구본부 해사산업안전연구실	성명	박제영	직급	연구원	보안교육 수강여부	○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출장목적 : IMO 제113차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정부대표단 전문가 활동							
관련사업 (예산항목)	국제해사기구(IMO) 정책 기반 글로벌 해사 네트워크 강화 연구(적립금)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출장기간	2026.4.11.(토) ~ 2026.4.19.(일) (7박 9일)			출장지		영국 런던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4.11.(토)	부산(08:00)→인천(09:10) 인천(10:55)→런던(17:20)		항공 이동		KE1404, KE907 숙소까지 대중교통 이동		
	4.12.(일)	한국해사협력센터(KMC) 런던 사무실		대표단 사전대책회의		대중교통 및 도보		
	4.13.(월)	오전 :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단 사전대책회의 및 LEG 113 본 회의 참석(의제의 채택, IMO 협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 및 지침 등)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 국제해사기구(IMO)						
	4.14.(화)	오전 : 국제해사기구(IMO)		LEG 113 본 회의 참석(허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조치 등)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 국제해사기구(IMO)						
	4.15.(수)	오전 : 국제해사기구(IMO)		LEG 113 본 회의 참석(해사분야 법제 관련 기술협력활동,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및 기타 조약문서 채택 현황 검토 등)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 국제해사기구(IMO)						
	4.16.(목)	오전 : 국제해사기구(IMO)		LEG 113 불법운항방지 조치 작업반(WG) 참석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 국제해사기구(IMO)						
	4.17.(금)	오전 : 국제해사기구(IMO)		LEG 113 본 회의 참석(신규 작업과제, 기타사항 등)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 국제해사기구(IMO)						
	4.18.(토)	오전 : 국제해사기구(IMO)		LEG 113 결과 검토회의 - 최종 결과보고서 검토 - 외교부 전문/요약 작성		대중교통 및 도보		
오후 : 런던(19:35)→인천(+1 16:15)								
4.19.(일)	인천(18:25)→부산(19:35)		항공 이동		KE140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당초 계획한 IMO 제113차 법률위원회(LEG 113) 주요 의제 대응, 정부대표단 지원, 국제 해사 법·제도 논의 동향 파악 및 연구 연계 기반 확보 등의 출장목적들을 모두 수행함 - 특히 본인 담당 의제인 의제 8(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조치) 및 의제 15(해사보안위협 대응 조치방안)를 중심으로 회원국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 대응 및 연구 활용 기반을 확보함 - 아울러 선원의 공정한 대우, HNS 의정서 발효, 허위선박 등록 방지 등 주요 의제 논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정책 및 연구 활용을 위한 자료를 확보함 ○ 주요 성과 - 정부대표단(KMI 자문기관) 일원으로 제113차 LEG 회의 대응 및 의제별 논의 분석 지원 - 의제 8 담당자로서 현행 MASS 로드맵 유지 결정과 향후 책임·배상체계 및 비강제 코드 논의 방향 등 국제규범 동향을 파악함 - 향후 MASS 관련 책임·배상체계 검토가 LEG 핵심 의제로 지속 추진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국내 자율운항선박 정책·제도 연구 연계 기반을 확보함 - 의제 15 담당자로서 사이버 공격, 불법화물 운송 등 신규 해사보안위협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분석함 - 회기간 실무작업반(Correspondence Group, CG) 개설이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단 일원으로 CG 참여 예정에 따라 향후 국제논의 대응 기반을 마련함 - 국제기구 및 회원국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MASS 및 해사보안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국가별 입장을 파악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LEG 113 결과 중 의제 8(MASS) 및 의제 15(해사보안위협) 중심 논의사항을 원내 세미나·콜로키움 등을 통해 공유 예정 - MASS 및 해사보안 관련 논의를 타 IMO 위원회와 연계하여 국제규범 변화 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의제 8(MASS) 관련 비강제 코드 및 책임·배상체계 논의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부 대응과 연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 - 의제 15(해사보안위협 대응 조치방안) 관련 회기간 실무작업반(CG)에 참여하여 신규 해사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에 지속 대응 예정 - CG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해사보안 정책 및 관련 연구과제 발굴에 활용 예정
특이사항	- 의제 8(MASS)는 비강제 코드 검토를 위한 회기간 작업반은 구성되지 않았으나 기존 MASS 로드맵은 유지되어 향후 단계별 책임·배상체계 검토가 지속 추진될 예정임 - 의제 15(해사보안위협 대응 조치방안)은 기존 해적·무장강도 중심 논의에서 사이버 공격, 불법화물 운송 등 신규 해사보안위협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됨 - 특히 의제 15 후속조치로 회기간 실무작업반(CG)이 구성되었으며, 본인이 의제 담당자로 참여 예정인 만큼 향후 관련 논의 동향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4.13.(월)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
수행계획	☐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현지사전대책회의,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 (장소) IMO(국제해사기구) - (참석자) 박제영 연구원, IMO 정부대표단 등 14명 - (주요내용) 1) 대표단 사전대책회의 · LEG 113 주요 의제 및 훈령안 검토, 정부대표단 회의 대응전략 수립, , 각 작업반 대응계획 및 이슈사항 공유 2) 의제의 채택, IMO 협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 및 지침 등 · IMO 협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 및 무력 사용 규탄, 군사행위 중단 및 선박, 선원 해양환경 보호 등
수행결과	1. 대표단 사전대책회의 ○ (수행 경과) - LEG 113 개회 전 정부대표단 사전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의제별 훈령안 및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의제 담당자별 역할 분담과 회의 대응전략을 논의함.어 조직 내 불만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청함. ○ (수행 결과) - 의제별 주요 쟁점사항 및 회원국 간 입장차를 공유하고 정부대표단 내 역할을 조정함. - 회기 중 작업반 운영계획, 주요 회원국 대응 동향 및 협의 필요사항 등을 검토함. - 특히 담당 의제인 의제 8(자율운항선박, MASS) 및 의제 15(해사보안위협 대응 조치방안) 관련 논의 방향과 검토 필요사항을 사전 점검함. 2. 의제의 채택 및 IMO 협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지침 ○ (논의 경과) - 의제 채택 및 회의 운영계획 검토 후 IMO 협약 이행 관련 보험증권(P&I) 검증체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회원국 논의가 진행됨. ○ (논의 결과) - 보험증권 검증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신뢰 가능한 보험사 정보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세부 이행방안은 후속 검토하기로 함. - 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선원, 선박 및 해양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 논의를 결정함.
업무②	4.14.(화)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
수행계획	☐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 (장소) IMO(국제해사기구) - (참석자) 박제영 연구원, IMO 정부대표단 등 14명 - (주요내용) 1) 허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선박 허위등록 방지를 위한 회기간 실무작업반(CG) 보고서 검토 및 선박 허위등록방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를 위한 문서 검증 등 실사 중요성과 등록지침 개발 필요성 제안 2)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조치 등 · 자율운항선박 관련 LEG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 초안을 참고하여 MASS 관할권, 선원, 책임 보상 등에 대한 검토
수행결과	1. 허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논의 경과) - 허위 선박등록 방지를 위한 실사 지침서 및 검증절차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선박 등록 시 교차검증 체계 구축, 실소유자 정보 확인 및 등록절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논의 결과) - 회기 중 작업반 논의를 통해 허위 선박등록 방지를 위한 실사절차 개발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함. 2.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에서의 자율운항선박(MASS) 운용을 위한 조치 ○ (논의 경과) - MASS 관련 현행 로드맵 유지 여부 및 비강제 MASS 코드 검토 일정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회원국들은 MASS 기술발전과 상용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제협약 체계 적용 가능성 및 향후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특히 자율운항 환경에서 선박 운항 주체,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보험 및 배상체계 적용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일부 회원국은 MASS 관련 법적 검토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다수 회원국은 기술적·법적 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함. ○ (논의 결과) - 위원회는 현행 MASS 로드맵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제114차 법률위원회에서 비강제 MASS 코드 검토를 위한 회기 중 작업반은 개설하지 않기로 함. - 향후 비강제 MASS 코드 관련 책임·보상 협약 개정사항과 강제 코드 관련 협약 개정 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제 논의가 기술적 논의를 넘어 책임·배상체계 등 법률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함. - 담당 의제 검토를 통해 향후 MASS 관련 국제규범 변화가 국내 자율운항선박 정책 및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성을 확인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4.15.(수)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
수행계획	□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 (장소) IMO(국제해사기구) - (참석자) 박제영 연구원, IMO 정부대표단 등 14명 - (주요내용) 1) 해사분야 법제 관련 기술협력활동 등 · 해사분야 법제 관련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검토 2)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및 기타 조약문서 채택 현황 검토 등 ·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및 기타 조약 채택현황 검토 및 미수용 협약에 대한 비준 등 논의
수행결과	1. 해사분야 법제 관련 기술협력활동 ○ (논의 경과) - IMO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TCP) 추진 현황 및 회원국 대상 해사 법률·제도 지원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회원국들은 개도국 중심의 국제협약 이행 역량 강화, 해사 법제 정비 지원 및 제도적 역량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특히 IMO 협약 비준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적·행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과 기술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해사분야 디지털화, 자율운항 기술 발전 및 신규 국제규범 확대에 따라 법률·제도 지원 수요 증가 필요성이 제기됨. ○ (논의 결과) - 회원국 대상 해사 법률·제도 관련 역량강화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기술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 - IMO 중심의 국제협약 이행 지원, 법률체계 정비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특히 개도국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와 회원국 간 경험 공유 필요성이 강조됨. - 향후 MASS, 해사보안 및 대체연료 등 신규 의제 확대에 따라 법률·제도 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됨. 2.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및 기타 조약문서 채택 현황 검토 ○ (논의 경과) - 법률위원회 소관 국제협약 비준 및 발효 현황과 미수용 협약 관련 현황을 검토함. - 회원국들은 주요 국제협약 발효 현황을 공유하고 미비준 협약 가입 확대 필요성을 논의함. - 일부 협약은 국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이행 수준 차이 및 행정 부담 등으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제해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협약 이행현황 점검 필요성도 함께 논의됨. ○ (논의 결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국제협약 수용 확대 및 협약 이행 촉진 필요성을 재확인함. -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함. - 향후 국제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 비준 및 이행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성을 확인함.
업무④	4.16.(목)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
수행계획	□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후속조치 회의 - (장소) IMO(국제해사기구) - (참석자) 박제영 연구원, IMO 정부대표단 등 14명 - (주요내용) 1) 선박 등록 관련 지침(Guidelines) 또는 모범사례(Best Practices) 개발에 관한 신규 작업 과제 채택 관련 검토 · 2027년 완료를 목표로 LEG 2026-2027년 2개년 작업과제에 포함 및 신규작업과제 논의 2) 선박 등록 지침 등 개발 · 선박 등록 관련 지침 모범사례 개발, 선박 등록 및 실사 절차 개선 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
수행결과	1. 선박 등록 관련 지침(Guidelines) 또는 모범사례(Best Practices) 개발 관련 검토 ○ (논의 경과) - 선박 등록 관련 지침 개발 진행상황 및 선박 불법운항 방지를 위한 규정식별작업(RSE) 추진 결과를 검토함. - 정부대표단 내 주요 회원국 발언 및 작업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검토 필요사항을 논의함. - 주요 의제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차기 회의 대응 필요사항을 검토함. ○ (논의 결과) - 선박 등록 관련 지침 개발 완료 후 회람문서를 통해 회원국에 공유하기로 함. - 선박 불법운항 방지를 위한 규정식별작업은 회기간 실무작업반 재구성을 통해 지속 추진하기로 함. - 회원국 입장 및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대응 방향을 검토함. 2. 선박 등록 지침 등 개발 ○ (수행 경과) - 정부대표단 후속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기간 중 논의된 주요 결과 및 대응 필요사항을 종합 검토함. ○ (수행 결과) - 의제별 회원국 입장 및 협상 동향을 정리하고 후속 검토 필요사항을 도출함. - 특히 의제 8(MASS) 책임·배상체계 논의 일정과 의제 15(해사보안위협) 회기간 실무작업반(CG) 참여 방향을 검토함. - 차기 LEG 대응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함.
업무⑤	4.17.(금)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
수행계획	□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참석 및 후속조치 회의 - (장소) IMO(국제해사기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참석자) 박제영 연구원, IMO 정부대표단 등 14명 - (주요내용) 1) 대체 연료 관련 IMO 책임보상제도의 적합성 검토과제 채택 관련 검토 및 탈탄소·디지털화와 관련된 신규 작업 주도를 위한 대응, 기타사항 의제 검토 2) LEG 113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주요 회원국 교섭활동 계획 및 결과 공유, 회의 결과보고서 정리, 차기 회의 대응 전략 수립
수행결과	1. 해사보안위협 대응 조치방안 ○ (논의 경과) - 기존 해적 및 무장강도 중심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이버 공격, 불법화물 운송 등 신규 해사보안위협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 회원국들은 디지털화 및 선박 자동화 확대에 따라 현행 IMO 협약 체계가 새로운 보안위협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 신규 해사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현행 협약 및 제도적 기반 검토 필요성에 공감함. ○ (논의 결과) - 신규 해사보안위협 대응방안 검토를 위한 회기간 실무작업반(Correspondence Group, CG) 개설이 결정됨. - 동 CG에서는 해적 및 무장강도 외 신규 해사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현행 IMO 협약 및 규정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함. - 본인은 의제 담당자로서 향후 회기간 실무작업반(CG)에 참여하여 국제 논의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연구 연계 검토를 수행할 예정임. - 향후 사이버 보안 및 MASS 연계 이슈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 2. LEG 113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수행 결과) - 회의 기간 중 주요 논의결과 및 회원국 입장을 종합 정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후속 대응방향을 검토함. - 특히 의제 8(MASS) 및 의제 15(해사보안위협) 관련 후속 논의와 회기간 작업반 대응 필요성을 확인함. - 차기 회의 대응을 위해 회원국 입장 변화 및 후속 논의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기로 함.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별첨1] 제113차 IMO 법률위원회(LEG 113) 작업의제 및 정부 대표단 구성(안)

<회의일정 및 작업의제(안)>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
LEGAL COMMITTEE 113th session Agenda item 1	LEG 113/1 8 September 2025 Original: ENGLISH	
PROVISIONAL AGENDA for the 113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to be held at IMO Headquarters, 4 Albert Embankment, London SE1 7SR from Monday, 13 April to Friday, 17 April 2026 Session commences at 9.30 a.m. on Monday, 13 April 2026		
Opening of the session		
1	Adoption of the agenda	
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credentials	
3	Facilitation of the entry into force and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the 2010 HNS Protocol	
4	Fair treatment of seafarers	
	(a) Provision of financial security in case of abandonment of seafarers, and shipowners' responsibilities in respect of contractual claims for personal injury to, or death of seafarers, in light of the progress of amendments to the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b) Fair treatment of seafarers in the event of a maritime accident	
	(c) Fair treatment of seafarers detained on suspicion of committing crimes	
5	Advice and guidance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a) Impact on shipping and seafarers of the situation in the Black Sea and the Sea of Azov	
6	Measures to prevent unlawful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 fraudulent registration and fraudulent registries of ships	
7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8	Measures to addre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in instruments under the purview of the Legal Committee	
9	Work of other IMO bodies	
10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maritime legislation	

I:\LEG\113\LEG 113-1.docx

LEG 113/1 Page 2	
11	Review of the status of conventions and other treaty instruments emanating from the Legal Committee
12	Development of guidelines or best practices on the registration of ships
13	Regulatory scoping exercise of IMO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available for Member States to further develop actions to prevent unlawful operations including substandard ships
14	Suitability of IMO liability and compensation regimes with respect to alternative fuels
15	Measures to address maritime security threats
16	Work programme
17	Election of officers
18	Any other business
19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its 113th session

Notes:

1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work of the Legal Committee*, as revised by the Committee at its 110th session (LEG.1/Circ.14):

- .1 documents should be received by the Secretariat as follows:¹
 - .1 documents containing proposals for new outputs, by **Friday, 9 January 2026 (13-week deadline)**;
 - .2 documents (including information documents) containing more than six pages of text (bulky documents²), by **Friday, 9 January 2026 (13-week deadline)**;
 - .3 non-bulky documents (six pages or fewer) commenting o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and 2 above, or on items already on the agenda, or non-bulky information documents, by **Friday, 6 February 2026 (nine-week deadline)**, and

¹ Documents other than information documents, which contain more than 20 pages, should not be translated into all working languages in their entirety. They should include, for translation purposes, a summary not longer than four pages, with the technical content submitted as an annex in the language needed by working groups (i.e. English). However, this restriction on translation will not limit the translation of a legal text.

² In the case of documents containing more than 50 pag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6.1 of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work of the Legal Committee* will apply.

I:\LEG\113\LEG 113-1.docx

<담당의제 및 정부 대표단 구성(안)>

붙임 2 제113차 법률위원회 의제

의제	내 용	담당(안)	비고
1	의제의 채택	KMC	
2	신임장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KMC	
3	2010년 HNS 의정서 발효 및 조화로운 해석 촉진	KOMDI	
4	선원의 공정한 대우	KIMET/외교부	
5	IMO 협약 이행과 관련된 권고 및 지침	KOMDI/KMC	
6	해위선박등록 관련 불법행위 방지 를 위한 조치	KOMSA/KIMET/외교부	
7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KIMET/외교부	
8	법률위원회 소관 현역에서의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조치	KMI/KOMSA/KMOU/KMC/법무부	
9	타 위원회 작업 관련 사항	KMC	
10	해사분야 법제 관련 기술협력활동	KMC	
11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및 기타 조약문서 채택 현황 검토	KMOU	
12	선박 등록 관련 지침 또는 모범사례 개발	KOMSA/KIMET/외교부	신규
13	자율운항선박 조치 개발을 위한 규정검토작업	KOMSA/KIMET/외교부	신규
14	대체연료 관련 IMO 책임배상제도의 적합성	KMOU/KSA/법무부	신규
15	해사보안위협 대응 조치방안	KMI/KIMET/외교부	신규
16	신규 작업과제	KMC/KMOU	
17	임원 선출	KMC	
18	기타사항	KSA	
19	제113차 LEG 결과보고서 검토	ALL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정 부	외교부 (주영대사관결 국제해사기구대표부)	IMO 담당관	류선형
	해양수산부	서기관	심규석
		사무관	박기범
		주무관	이홍식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	전문위원	이재원
	외교부(영토해양과)	사무관	서인성
자 문 기 관	한국해양협력센터	연구원	신지연 (간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전해동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장	조민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두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박제영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검사원	원동욱
	한국해양협회	대리	이현지

[별첨2]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정부대표단 활동 계획(안) 사전보고사항

<협조>
기조본부장



본부장	부원장	원 장
		조정리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정부대표단 활동 계획(안)

'25.12.8. 해사산업·안전연구실

□ 개요 및 목적

- (개요) 해사안전, 환경, 법률 등 해사산업 분야 정책 자문 및 정부 지원 목적으로 IMO 정부대표단으로서 주요회의의 참석·대응 中
- (활동내용) 주요 IMO 회의에 대한 논의의제 검토, IMO 외제문서 제출 등 해양수산부 정책수립 및 국제표준 마련 등 지원함
 - 대표단 사전대행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표단이 확정되며, 해수부 내부방침 확정 및 외교부 승인(출국 1주일 전) 후 대응 계획 확정
 - * 의제문서 제출(회의 13주 전) 등 고려해 통상 4개월 전 정부대표단 사전대행회의(3회 이상) 착수

□ 2026년 IMO 회의 참석 계획

출장자	회의명	기간	주요 담당의제
박재영	제113차 법률위원회(LEG)	'26.4.13.~17.	•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내 자율운항선박 관련 대응조치 계획 개발 및 착수
박한선	제84차 해양환경 보호위원회(MEPC)	'26.4.27.~5.1.	•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가이드라인 개발 • 해양연료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평가 계획개발
박혜리	제111차 해양안전위원회(MSC)	'26.5.13.~22.	• 해사안전정보 현황 및 보안 관리지침 개발 •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 및 비장애코드 채택 • 경합충돌기 로드맵 개발 제안 및 문서제출
김정국	제12차 확충·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26.9.14.~18.	• 대체연료 선박안전 지침 및 기술기준 논의 동향 파악 및 국내 기준 반영검토
박한선	특별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ES 2)	'26.11.9.~13.	• Net-zero framework 채택을 위한 추가 검토 (2025년 유회 1년 후 재가)
김보람	제85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	'26.11.16.~20.	• IMO 단기조치(CII) 개정 검토 및 문서제출 • 제5차 IMO GHG 연구 수행방안
박혜리	제112차 해양안전위원회(MSC)	'26.11.30.~12.4.	• 경합충돌기 로드맵 개발 확충(문서제출 검토) • 기술별 실무작업반 구성 및 세부기준 개발 착수

※ 국제 수행 과정, 정부의 특별 요청에 의하여 회의제 및 일정 이 변경될 수 있음

- 1 -

붙임 2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참석·대응 계획

□ 제113차 법률위원회(LEG) 회의 ('26.4.13.~4.17.)

- (출장자) 박재영 연구원
- (관련사업) IMO 정책 기반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강화 사업(적립금예정)
- (주요의제 및 역할)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IMO 법률위원회 소관 규제 검토 및 이행 조치 마련

출장자	분야	주요내용
박재영	법률위원회 소관 협약 내 자율운항선박 관련 대응조치 마련	- LEG 관할 IMO 협약의 적용 가능성 및 법적 공백 검토 - 사고·충돌·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의 법적 책임 범위 분석 - 원격운항선박 운영 및 신장·신원 역할·권한 등 기준 검토 - 국내외 자율운항선박 법적 및 정책 동향 분석

- (활용방안)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

□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26.4.27.~5.1.)

- (출장자) 박한선 선임연구위원
- (관련사업) 녹색해운항로 확대 및 한국형 모델 개발(R&D)
- (주요의제 및 역할) 국제해운 배출 온실가스 감축조치, 선박 대기 오염 및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 관련 협약 제개정 등

출장자	분야	주요내용
박한선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가이드라인 개발	- IMO Net-zero 프레임워크 경제적 요소(탄소세) 검토 - 중기조치 로드맵, 관리 조치 및 기금 사용처 등 자문 - 펀드 이사회 운영 규정 및 이사회 구성 하위 기구 제안
	전주기 온실가스 연료 평가(LCA) 개발	- 전주기적 관점에서 전력구매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 OCCS를 통해 포집된 CO2 저장량과 OCCS를 적용한 LNG의 연료 검토에 대한 인식 방안 검토

- (활용방안)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과 친환경선박 보급 및 확대 기본계획 목표에 따른 정부 정책화 실현

- 3 -